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69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699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141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A

피고, 상고인B

판결 선고 2016. 1. 14.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14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